

第121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 過徵金徵收地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	6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10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 위한 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	13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 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15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18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用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	21面
8. 2002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結果報告書 .....	25面
9. 都市計劃(案) 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	29面

###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審査報告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장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7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 동기능 전환 이후 주민문화복지센터를 개설 운영한 결과 자치단체·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보완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통해 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정(안 제4조)
- “사용료 등은 동장이 징수”를 “시설 등 사용료는 동장이, 프로그램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로 개정(안 제10조)
- “위원회는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을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 구성”으로 개정(안 제17조)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17조)
-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공개” 신설(안 제17조)

다. 개정근거

- 행정자치부 자제13101-141(2002. 3. 7)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안)
- 서울시 행정13101-1166(2002. 3.12)호, 1·2단계 동기능전환 보완지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사유

- 주민문화복지센터 개설 운영 등 동기능전환 이후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보완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이 2002년 3월 7일 시달되었음
- 이에 따라 개선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 통일, 일원화(안 제4조)
- 구의 자치센터 재정지원 원칙 제시, 민간인에 대한 업무위탁 및 사업비 지원 근거마련, 구 단위 자문단 설치 운영 등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으로 공무원 부담 완화(안 제7조)
- 사용료와 수강료의 구분,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방법, 감면기준 제시, 징수주체 및 회계책임의 명시 등 관리체계의 명확화(안 제10조)
- 시설 등의 노후 등 하자로 인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안 제11조)

- 위원회 구성 인원 하한선 폐지,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3인 이내의 고문제도 도입(안 제17조)
-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위원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위원 인적사항 공개 등 명시(안 제17조)
- 고문의 역할과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명시(안 제18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동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 개설 운영 등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개선안 등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제안된 사안임
- 특히 우리 구에서 논란이 되었던 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통일, 일원화하면서 자치활동 관련 기능을 강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역할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밝힘으로써 동 자치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센터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하고 이의 징수주체를 명시,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방법 및 감면기준 제시, 경비지출 등 회계책임 명시 등으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한 것은 제도 초기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동기능전환 사업의 핵심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진보되고 발전된 제안이라 사료됨
- 다만, 위원의 임기를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은 비적임자를 조기에 퇴출시키고 관심있는 전문인사의 영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임명 절차상 번거로움과 짧은 활동기간으로 인하여 위원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등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 (안) 제10조의 별표상에 책정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이 고려된 적정금액인지 여부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현행 조례상에는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 제17조에서는 자치센터별로 3인 이내의 고문을 두어 조언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면서도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위촉 여부는 전적으로 구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위촉을 원치 않을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구의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주민자치센터는 집행부에서 주민에 대해 복리증진 등 고유업무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조직으로 동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면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토록 한 것은 구의원이 조언과 자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구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미위촉될 경우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구의원이 집행부의 조직인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자칫 포기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취질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8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 시설사용료·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10조 관련)

○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단 위	면 적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1시간	50㎡ 이상	10,000원	부대시설 포함
		50㎡이상 ~100㎡미만	15,000원	
		100㎡이상~150㎡미만	20,000원	
		150㎡이상~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수강료	월	-	30,000원	1인 1프로그램

※ 시설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하며,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사용료 등 감면기준

구 분	감면비율	대 상
사용료 및 수강료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저소득 모·부자가정 ○ 등록된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사용료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흥 기 서 위원, 천 상 욱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문) (안)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추천하는 후보자도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 구의원을 명문화하지 아니했어도 좀 더 걱정한 위원이 위촉되도록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개모집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 (안)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위원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바꾸었는데,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할 경우 지역갈등도 심화되고 기간이 너무 짧아 활동에 제한을 받으며 위원장의 위상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기존 조례에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교체시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해서 생기는 폐단도 있어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 준칙대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문) (안)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상·하한선을 모두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하한선을 없앴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이것은 지역실정을 고려하고 지역마다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5. 討 論 要 旨

○천상옥 위원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

- 안 제17조7항 중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동의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천상옥 위원 수정동의(안) : 부결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 2.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7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 가. 폐지이유

-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여 징수하던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제도가 1999. 1. 21 관광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어 관광진흥법시행령으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됨에 따라 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

##### 다. 폐지근거

-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99. 1. 21 법률 제5654호)
-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

####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폐지 사유

-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징수하던 관광사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 제도가
-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었던 규정이 폐지되면서, 동법시행령 상에 직접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종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소멸에 따른 종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

다. 검토의견

-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1995년 11월 15일 조례 제300호로 제정 운영 중인 종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가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조례 설치근거 조항이 소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징수하던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제도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었음
- 따라서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었던 동 조례를 폐지하고, 동법시행령 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임

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권자 현황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권자 현황(시행령 별표3)

위 반 행 위	부과 및 징수권자
1. 관광사업등록 가.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때 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때	국가 기초자치단체
2. 허가 및 신고 가.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나.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다.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기초자치단체
3.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4.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에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때	국가 기초자치단체

위 반 행 위	부과 및 징수권자
5.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국외여행을 인솔한 때	국가 기초자치단체
6. 분양 및 회원모집 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때 나. 분양 또는 회원모집 약관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때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때 라.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광역자치단체
7.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 가.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때 나. 카지노영업소에 19세미만의 자를 입장시킨 때 다.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국가
8. 유원시설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기초자치단체
9.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기초자치단체
10. 유원시설업자의 영업질서 유지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때	기초자치단체
11.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때	국가 기초자치단체
12. 보고·검사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관계공무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방해한 때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천 상 옥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문) 조례가 폐지되면 종로구 세입이 얼마나 감소하게 됩니까?

답) 관광사업은 관광호텔, 휴양업, 카지노 등 총 23종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 대상이 대부분 일반여행업과 숙박업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없습니다. 단속에 대한 조치도 대부분이 경고

가 주어지며 영업정지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입조치 한 경우가 한 건도 없으며, 따라서 조례가 폐지되어도 세입결손은 발생치 않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3.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7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하 철 승)

가.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 명칭 변경 등 개정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이 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함
-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로 용어 정리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다. 개정근거

-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과 용어 등 개정된 관련조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 개정된 의료급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일부 불필요한 조례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안 제명)
- 조례 내용 중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 정리(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대불금의 상환, 결손처분, 결산에 관한 보고 등은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다.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은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에 의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 변경 등 개정된 관련조항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 (안) 제9조의 결손처분, (안) 제9조의2의 결산에 관한 보고 등을 삭제하는 것은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른 것으로서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또는 규칙에 각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 음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4.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7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하 철 승)

가. 폐지사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의 제정으로 동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2000. 7. 1)되어 존치 실익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1989. 5. 6, 조례 제82호) 폐지

다. 폐지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2000. 7. 1)에 의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폐지 사유

-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본 조례 설치근거법인 국민의료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조례로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

다. 검토의견

- 그동안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하여 의료보험업무를 지원하여 왔으나
-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면서 그 임무와 기능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흡수 통합되었음
- 따라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조문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없 음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5.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7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하 철 승)

가. 개정이유

-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 구성·조직 기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존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조례에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등 사항을 삽입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전문 개정
-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1-인에서 15인으로 확대
-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개정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 가. 개정 사유

-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 청소년 보호·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의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로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 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기능 등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지도위원의 자격·위촉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 골자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
- 위원회 구성 인원, 위촉방법,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2조)
- 동별 청소년지도위원 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안 제3조)
-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근거조항 신설(안 제12조)

####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우리 구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면서 감시활동도 병행하도록 임무 지워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임
- 동별 청소년지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촉된 지도위원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등 여건조성과 아울러서 명확한 임무 부여 등 위원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 라.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 ①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청소년지도위원)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3조(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기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문) 청소년위원회도 각 동별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청소년위원회는 구 차원에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에만 구성하는 것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7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하 철 승)

가. 개정이유

- 무인자동제어 이동식 화장실 설치계획(구청장 방침 청행 91000-467, 2001. 12. 14)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한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6조제2항(사용료) 신설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경우 200원 이내의 사용료 징수

다. 개정근거

- 무인자동제어 이동식 화장실 설치계획(구청장 방침 청행 91000-467, 2001. 12. 14)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사유

- 우리 구에서 설치하였거나 앞으로 설치할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제6조제2항(사용료) 신설
  -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경우 200원 이내의 사용료 징수

다. 검토의견

- 월드컵 대회와 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우리 구 관내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징수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은 타당한 조치임
- 따라서 조례상에는 사용료 징수 상한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되 앞으로 가칭 “공중화장실사용료심의위원회” 등을 별도로 두어 기간 단위별로 현실 사용료 금액을 심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라. 종로구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 설치 근거
  - 서울시 부시장 방침 제1065호(2001.11.29) : 이동형 및 소규모화장실 설치계획
  - 종로구청장 방침(청행 91000-467, 2001.12.14) : 첨단무인자동제어화장실 설치계획
- 설치 개수 및 장소
  - 설 치 완 료(3개소) : 종로1가(2002.3.8), 복인사동(2002.4.24), 세종문화회관(2002.5.1)
  - 추가설치계획(2개소) : 종로3가, 종로6가
  - ※2002년 5월중 설치
- 시설 개요
  - 시설 : 양변기 1대, 세면기 1대
  - 자동화기능
    - 시트 및 바닥 자동세척, 출입문 자동개폐, 2인 동시 이용불가
    - 자동화기능 장애시 자동인식기능, 냉·난방 조절기능
    - 중앙원격제어시설체제 구축(전화 및 인터넷 구축)
  - 이용방법 : 100원 주화 투입으로 가동, 자동안내멘트
- 소요예산 : 서울시 예산 지원
  - 대당 8,000만원×5대=4억원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선 상 선 위원, 홍 승 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하 철 승)

문) 우리 구에 현재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어디입니까?

답) 우리 구에는 현재 종로1가와 인사동길 북측, 세종문화회관의 3곳에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2대를 더 설치하게 됩니다.

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답)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며, 대당 8천만원씩 총 4억원이 소요됩니다.

문) 사용료를 현재 1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한 것입니까?

답) 수입목적이 아니고 야간에 외국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일체 두지 않으며 단지, 화장지 교체인력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7.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7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이 병 만)

가. 폐지이유

-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법률 제6236호 2000.1.28 공포) 2000. 7. 29부터 시행되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법 제37조의3)가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현행 제도는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

다. 폐지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폐지(법률제6236호, 2000.1.28 공포)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폐지이유

- 모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폐지코자 함

나. 모법에서 조정위원회 규정을 삭제한 배경

- 1984년도에 소개영업법을 부동산중개업법으로 대체하면서 중개과정에서의 중개수수료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중재 이용건수가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체수단으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실제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갖추코자 함

다. 개정 전·후 법 대비

개 정 전(구법)	개 정 후(신법)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의3 (삭제) 제37조의4 (삭제) 제37조의5 (삭제)
제37조의4,5(조정 절차·처리) ①분쟁조정 신청→상대방에 통지 ②소속공무원 사실조사 ③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조정사항의 통지→거부:소송제기가능	(신설) 제16조의3(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거래예정가격 3.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라. 현행 우리 구 조례 개요

- 1994년 6월 25일 조례 제246호로 제정
-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
- 위원은 7인 이내이며 3년 임기(의회 의원 : 정태순의원)
- 심의 신청건수 : 조례 제정 이후 전무

마. 신설된 중개계약제도의 내용

-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건교부령) 제14조의2(중개계약의 표준서식)



바. 검토의견

- 모법이 삭제됨에 따른 폐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종전의 중개수수료 분쟁 시는 본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행정청에 고발하여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해당 중개업소에는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었으나 신설된 중개계약제 이후에는 업소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다징수 수수료의 환급까지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 조례 폐지가 되더라도 중개분쟁 해소에는 하등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현 수 한 위원, 정 병 환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이 병 만)

문) 중개업소 교육은 1년에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답)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으며 중개업협회에서 중개업소 사무실개설 이전 및 이후에 일정기간 하고 있습니다.

문)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 가보면 수수료 요율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고객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부착되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 상반기와 하반기 및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시정조치 처리하며 중한 것은 허가취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8. 2002年度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審 查 報 告 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7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이 병 만)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직공원 부지 내 구민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문화체육 센터를 건립
- 구 혜화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구 숙원사업인 다목적 구립 운동장 건립

다.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변경 요청 배경

- 종로구의 숙원사업인 구립 종합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

나. 신청 내용 : 공공시설부지의 취득

< 세부내용 >

(단위:천원)

건별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취득 사유	추 정 가
	계					10,748,807
1	사직동 산1-48	임 야	3,207㎡ (971평)	국(산림청)	종로문화체육센터	317,494
	사직동 산1-56	임 야	619㎡ (187평)	국(국방부)		57,876
2	명륜1가 1-27	학교용지	14,066㎡ (4,262평)	서울시교육감	다목적구립운동장	9,832,274
	명륜1가 1-27	건 물	6,138㎡ (1,860평)	서울시교육감		239,250
	명륜1가 1-36	임 야	154㎡ (46평)	국(교육부)		56,980
	명륜1가 1-37	임 야	50㎡ (15평)	국(교육부)		18,938
	명륜1가 1-41	임 야	225㎡ (68평)	국(교육부)		65,025
	명륜1가 7-68	임 야	215㎡ (65평)	국(교육부)		160,970

다. 취득토지 활용계획

< 구립 운동장 건립계획 >

- 추진기간 : 2002년 ~ 2005년
- 사업비 : 12,374백만원
  - 토지매입비 : 10,134백만원(2001공시지가)
  - 건물매입비 : 239백만원(교육청, 대장가액)
  - 시설비 : 2,000백만원
- ┌ 운동장 : 70m×100m
- └ 부속시설 : 관리실(30평), 주차장

○ 사업추진경위

- 1998. 12. 18 : 구립운동장 건립추진 방침 입안(혜화초교 부지)
- 2001. 6. 26 : 토지 매각 협의(종로구→중부교육청)
- 2001. 6. 26 : 서울시 투자사업 선정 및 교부금 지원요청(종로구→서울시)
- 2002. 3. 13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운동장 건립계획)

<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

○ 추진기간 : 2002년 ~ 2003년

○ 사업비 : 11,600백만원

- 토지 매입비 : 376백만원
- 건축비 : 10,816백만원
- 설계비 : 408백만원

○ 시설규모 : 지하2층, 지상3층(연면적 6,756㎡)

○ 시설내용 : 체육관, 수영장, 소극장, 문화전시실, 주차장 등

○ 사업추진경위

- 2000. 5. 10 : 건립추진 방침
- 2000. 5. 13 : 토지 매입 협의(종로구→산림청, 국방부)
- 2001. 3. 12 : 토지 매각의사 통보(산림청, 국방부→종로구)
- 2001. 4. 19 : 사업비 지원 건의(종로구→서울시)
- 2002. 1. 23 : 시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울시→종로구) 지원액 2,160백만원
- 2002. 3. 15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라. 검토의견

○ 부지매입을 위하여 사전에 소관 관리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변경계획(안)의 실효성은 인정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오금남 위원, 김복동 위원, 오필근 위원, 정병환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이병만)

문) 문화체육센터와 구립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답) 구비만으로는 어렵고 국비, 시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참고로 문화관광부에서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 종로구 동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적은 서부지역에 문화체육센터건립을 환영하는 바이며 현재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약은 없습니까?

답)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하여 고시 단계에 있습니다.

문) 혜화초등학교 및 사직동의 부지 매입시 매입가는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매입합니까?

답) 감정가로 매입합니다.

문) 혜화초등학교 부지를 구립 종합운동장으로 활용하는데 대하여 입지조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다른 곳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타구의 여러 운동장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와룡공원과 구민생활관에 인접해 있어 적합한 입지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9. 都市計劃(案) 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I. 都市計劃施設(學校)決定(案)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황 의 진)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관내 평동 85-15의 2필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을 공람 공고하고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학 교	대 학	종로구 평동 85-15의 2필지	-	증)2,106	2,106	-	적십자 간호대학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정 병 환 위원)

(답변자 : 황 의 진 도시관리국장)

문) 평동 85-15 외 2필지의 원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답) 총 면적이 2,106㎡인데 이중 0.7㎡만 제외하고 모두 적십자간호대학 소유입니다.

문) 현재 적십자간호대학 소유의 땅을 학교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4. 意 見 採 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II. 都市計劃施設(學校, 公園) 및 用途地域 變更決定(案)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황 의 진)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관내 필운동 3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공람 공고하고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초등학교	종로구 필운동 32 번지 외 3필지	11,322	감)181	11,141	'87.2.17	상호 위치 변경 (사직동 1-2)
변경	공 원	사 직 근린공원	종로구 사직동	118,710	-	118,710	'40.3.12	

○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지 역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학 교	종로구 사직동 1-2	181	면적 변경없는 위치 변경 (사직동 1-2)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공 원			

3.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 음

4. 意 見 採 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Ⅲ. 都市計劃施設(公共廳舍, 公園) 및 用途地域 變更決定(案)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200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5월 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13)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황 의 진)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관내 삼청동 산 2-63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공람 공고하고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	종로구 삼청동 산 2-16 일대	2,701.2	-	2,701.2	'91.5.2	공원과 상호 위치 변경
변경	공 원	삼청 근린공원	종로구 삼청동 산 2-63 일대	2,701.2	-	2,701.2	'40.3.12	공공청사와 상호 위치 변경 (삼청근린공원 A=378,440㎡)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지 역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공 원	종로구 삼청동 산 2-16 일대	2,701.2	면적 변경없는 위치 변경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종로구 삼청동 산 2-63 일대		

3.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 음

4. 意 見 採 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